

수원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가단17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8864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가단1786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옥필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9.부터 이 판결선고시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매매대금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9.경 피고들에게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 D가 보유한 화성시 E 관련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의 매매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들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몰래 나누어 가진 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5. 6. 19.경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 D가 보유한 화성시 E 관련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의 매매 알선을 부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50,000,000원을 받은 다음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대금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9.경 피고들을 통하여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 D가 보유한 화성시 E 관련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각 17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각 2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위 각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각 23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들도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합한 각 30,000,000원 중 각 25,000,000원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위 각 매매과정에서 각 25,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들이 해당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해당 금원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1) 원고는 2021. 6. 16.자 준비서면에서는 ‘각 3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별도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택하여 판단하였다.